

# 수출신용보증 인수규정

제정 : 2018. 8. 31  
1차 개정 : 2018. 12. 21  
2차 개정 : 2020. 10. 20  
3차 개정 : 2021. 12. 30  
4차 개정 : 2022. 08. 04  
5차 개정 : 2022. 09. 30  
6차 개정 : 2023. 2. 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무역보험 관련 법규(업무방법서 포함, 이하 동일)에서 정한 수출 신용보증(이하 “신용보증”) 종목의 인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신용보증의 인수 업무는 무역보험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채무자”란 신용보증 대상기업(개인기업인 경우 대표자)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보증상대방”이란 공사와 신용보증관계를 맺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그 밖의 수출유관기관 등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수출신용보증서”(이하 “보증서”)란 청약서(전자문서 형태의 청약서 포함, 이하 동일)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발급된 보증서(전자문서 형태의 보증서 포함, 이하 동일)를 말한다.  
④ 이 규정에서 “부분보증”이란 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 등에 대하여 공사와 보증상대방이 일정한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신용보증을 말한다.  
⑤ 이 규정에서 “회전보증”이란 신용보증한도(이하 “한도”)와 보증서 유효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 규정에서 “개별보증”이란 보증서에 기재된 특정 수출계약 또는 특정 자금과 관련하여 상환기일이 보증기간 이내에 도래하도록 실행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규정에서 “건별승낙”이란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건별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규정에서 “개별특약”이란 개별 인수 건 또는 개별 기업에게 제한적·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보증상대방과 체결한 특약을 말하며, “일반특약”이란 불특정 다수에 적용하기로 하고 표준화하여 제정한 특약(이 규정에서 개별특약이라고 특별히 지칭하지 않은 경우의 특약은 모두 일반특약을 지칭)을 말한다.  
⑨ 이 규정에서 “수출이행자금한도”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음 각 호 종목의 유효한

한도와 책정예정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환변동보험 환수금 회수 특례 보증한도, 채무상환보증한도는 제외한다.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2.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

⑩ 이 규정에서 “수출채권 유동화 종목”이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를 말한다.

⑪ 이 규정에서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 종목”이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을 말한다.

⑫ 이 규정에서 “수출자 유동화한도”란 수출채권 유동화 종목에 적용하는 한도를 말한다.

⑬ 이 규정에서 “부실자료”란 기업이 보증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신용보증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신용보증 종류)** 제1조의 신용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2. 수출신용보증(제작자금)
3.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4. 수출신용보증(선적후)
5. 수출신용보증(Nego)
6. 수출신용보증(매입)
7.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제4조(신용보증 대상기업)** ① 신용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 종목의 신용보증부 대출이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관」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해당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의 소속기업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이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가 된 경우에는 기업의 원활한 채무 상환을 위해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증기간은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가 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장제3절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는 국내 소재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에 대해 지원한다.

**제5조(신용보증 제공)** ① 신용보증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실시하고, 그 상담 결과에 따라 신용보증을 제공하거나 신용보증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은 채무자 또는 보증상대방으로부터 청약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한도를 책정하고, 보증서를 발급한다.

**제6조(신용보증 금지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의 한도 책정을 금지한다.

1.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신용보증 사고와 관련하여 공사에 대한 채무(공사로부터 감면받거나 법률에 의해 면제 또는 면책 받은 채무는 제외)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2.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금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채무자가 허위 수출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보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4. 채무자가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연체 중인 경우
5. 채무자가 휴·폐업 상태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전액 이상의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장제1절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용보증의 제공을 제한하는 사항은 제3조 각 호의 종목을 관장하는 인수로령에 따른다.

**제7조(신용등급 평가)** 신용보증 제공을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사신용조사규정」에 따른다.

**제8조(한도 책정 및 신용보증약정 체결)** ① 한도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재무상태, 수출실적, 거래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책정하고,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다.

②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신흥시장 개척 등 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도를 우대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③ 한도를 책정한 이후 보증기간 연장 등 심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를 재책정하거나 조건변경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조건 변경)**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 채무자, 수출대금 결제조건, 한도, 보증비율, 특약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한도 해지)** ① 채무자 또는 보증상대방이 한도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해지한다.

② 채무자 신용상태의 변동,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신용보증 거래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공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한도를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부분보증)** ① 위험 관리 및 효율적인 신용보증의 관리를 위해 부분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 본부장이 신용보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부분보증의 비율은 수출거래 형태, 금융기관 등의 성격, 자금의 특성, 이용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개별특약 체결)** 개별특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약관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강화하는 보증서의 유효조건, 세부 행정절차 및 기타 신용보증 인수 관련 경미한 사항 등은 전결권자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13조(관할 부서)** ① 신용보증의 인수는 채무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사 또는 1개 지사에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채무자의 관할 부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관받는 부서에서 이관 부서의 합의를 거친 후에 담당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 제2장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제1절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제14조(신용보증 대상)** ① 이 절의 신용보증 대상은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용보증부 대출 또는 신용보증부 지급보증으로 한다.
- ②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관」 제2조제2호의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수출 이행 자금
  2. 수출 성장 자금
  3. 단기 수출 거래 관련 대출(제작기간에 한정)
- ③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관」 제2조제5호의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용장을 수취한 경우, 제4호의 경우에는 구매확인서를 수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조달청의 비축물자 방출
  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 지원 관련 자금 대출
  3. 한국무역협회 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관련 자금
  4. 구매확인서 지원 자금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의 수출 관련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
  6.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자금
  7. 무역어음대출
  8. 수출진흥금융
  9. 기타 대출자금의 성격, 대출대상기업의 요건 등을 감안하여 수출을 진흥할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담당 본부장이 인정한 자금 대출

**제15조(신용보증 방법)**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은 회전보증 또는 개별보증으로 한다.

**제16조(수출이행자금한도)** 수출이행자금한도는 중소기업 100억원, 중견기업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외 시장의 확보 또는 수출 진흥을 위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영위원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리스크관리 · 측정요령」 상 국내기업 총액한도와 200억원(중견기업 400억원) 중 작은 금액 이내의 범

위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등급 5등급 이상의 외국정부가 계약당사자인 조달사업 관련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인수요령」 상 국제기구 발급 P.O.를 수취한 기업에 개별 보증을 하는 경우
2. 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신용등급 C급 이상의 기업(제조업에 한정함)에 개별보증을 하는 경우
3.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인수요령」 상 수출실적과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등급 C급 이상의 기업(제조업에 한정함)에 회전보증을 하는 경우

## 제2절 수출신용보증(제작자금)

**제17조(신용보증 대상)** 이 절의 신용보증 대상은 「수출신용보증(제작자금) 약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용보증부 대출 또는 신용보증부 지급보증으로 한다.

**제18조(신용보증 방법)** 이 절의 신용보증은 개별 수출계약에 대하여 건별로 보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박수출의 경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2개 이상의 복수 수출계약을 Pooling하여 일괄 지원할 수 있다.

## 제3절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제19조(신용보증 대상)** 이 절의 신용보증 대상은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 보증 특약」에서 정한 신용보증부 대출로 하고, 대출금 종류는 대·중소상생협력자금과 수출생산자금으로 한다.

**제20조(신용보증 방법)**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은 회전보증 또는 개별보증으로 한다.

## 제3장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 종목

### 제1절 공통사항

**제21조(수출자 유동화한도 운영)** ① 수출채권 유동화 종목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자 유동화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자 유동화한도는 미화 10백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담당 본부장이 승인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자 유동화한도를 미화 20백만불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제22조(신용보증 방법)**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은 회전보증 또는 건별승낙으로 한다.

**제23조(준용)** 결제관행의 사전인정기간 및 소손해 면책금액은 「단기인수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 제2절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제24조(신용보증 대상) 이 절의 신용보증 대상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대한 신용보증부 대출로 한다.

제25조(무역보험 연계) 이 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대하여 단기수출보험(선적후)를 연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 제3절 수출신용보증(Nego)

제26조(신용보증 대상) 이 절의 신용보증 대상은 「수출신용보증(Nego) 약관」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대한 신용보증부 대출로 한다.

제27조(무역보험 연계) 이 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보증(Nego) 약관」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대해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을 연계하여 가입할 수 있다.

### 제4절 수출신용보증(매입)

제28조(신용보증 대상) 이 절의 신용보증 대상은 「수출신용보증(매입) 약관」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대한 신용보증부 대출로 한다.

제29조(무역보험 연계) 이 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보증(매입) 약관」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대해 단기수출보험(선적후)를 연계하여 가입할 수 있다.

### 제5절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제30조(신용보증 대상) 이 절의 신용보증 대상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약관」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대한 신용보증부 대출로 한다.

제31조(무역보험 연계) 이 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약관」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대해 단기수출보험(선적후)를 연계하여 가입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32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인수요령」,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인수요령」, 「수출신용보증(Nego) 인수요령」, 「수출신용보증(매입) 인수요령」,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인수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인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발급한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 보증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인수요령」의 제5장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을 따른다.

부 칙(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